

審 查 報 告 書

2002. 1. 18

총무위원회

1. 審 查 經 過

- 가. 提出日字 : 2002. 1. 8
- 나. 提出者 : 瑞山市長
- 다. 回附日字 : 2002. 1. 10
- 라. 上程日字 : 2002. 1. 18

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 : 稅務課長 文哲柱)

가. 提案理由

- 전국네트워크망 개통으로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민원증명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편리하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主要骨子

-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책임자를 해당 실·과·소의 장 및 읍·면·동장으로 함.
-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,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책임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함.

-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하는 전자수입증지는 기존 도안으로 하지 않음.
-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책임공무원 지정과 관련하여 안 제5조와 중복된 내용 삭제.
- 민원발급기 사용시 수입금 정산근거 삽입.
-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해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하지 않음.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본 개정 조례안은 1단계로 시군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전국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민원행정의 질을 한단계 높이고 기존의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서
- 주요 검토내용은
 -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한계를 명백 하였으며
 - 전국 네트워크망을 이용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운영에 따른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임.
- 따라서, 본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1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2. 討論 및 小數意見 : 없었음

3. 審査結果 : 원안가결

의안번호	제 242 호
의 결	2002. . .
년 월 일	(제 회)

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2002. 1. 8.

서산시수입증지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1. 8
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1. 개정이유

- 전국네트워크망 개통으로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민원증명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편리하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책임자를 해당 실·과·소의 장 읍·면·동장으로 함(안 제5조제3항)
- 나.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,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책임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함(안 제5조2)
- 다.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하는 전자수입증지는 기존 도안으로 하지 않음(안 제6조)
- 라.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책임공무원 지정과 관련하여 안 제5조와 중복된 내용 삭제 (안 제8조)
- 마. 민원발급기사용시 수입금 정산근거 삼입(안 제21조)
- 바.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해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하지 않음(안 제2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근거법령 :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6항 및 제11조의2
- 나. 관련사업계획서 : 무인민원발급기설치계획
- 다. 입법예고 결과의견
 - 예고기간 : 2001. 11. 23 ~ 2001. 12. 12(20일간)
 -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서산시수입증지조례증개정조례안

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중 “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” 를 “관리책임자는 해당 실·과 소의 장 및 읍·면·동장으로 하며” 로 한다.

제5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2(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)①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부서의 장으로 하며, 발행기관명, 발행장소, 계기고유번호,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.

제6조제2항중 “요금계기의 사용시에는”을 “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시에는”으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수입증지 판매인 지정)수입증지는 시장이 지정한 판매인(이하“판매인”이라 한다)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. 다만, 읍·면·동에서 판매하는 판매인은 당해 읍·면·동장이 지정한다.

제21조 제목을 “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”을 “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사용 수입금의 정산”으로 하고, 제2항 및 제3항의 “계기”를 “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중 “수입증지 요금계기”를 “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1조(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)

①(생략)

②계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③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“결손” 소인을 하여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.

제24조(증지의 소인) ①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,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않는다.

② (생략)

제21조(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사용 수입금의 정산) ①(현행과 같음)

②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-----

③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-----

제24조(증지의 소인) ①-----

--,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-----

② (현행과 같음)